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민·관·경 협력체제인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기능(안 제3조)

-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등 협의

○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안 제4조 및 제5조)

- 위원 25명 이내, 당연직 위원(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 위촉직 위원 :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단체장 및 전문가

○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추진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증진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민·관·경 협력체제인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법질서 학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등 협의 등의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은 25명 이내,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등으로 하는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5조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번 조례 제정으로 충북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강화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민·관·경 협력체제의 시스템이 갖추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의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